## [서식 예] 증인신청서(법원 비치서식)



## 증 인 신 청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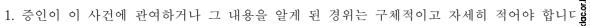
- 1. 사건 : 20 0 0 가단 0 0 0 대여금
- 2. 증인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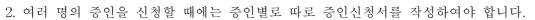
성 명		$\odot \odot \odot$	직	업		농	업	
주민등록번호	000	00000-00000						
주 소	00/	00시 00구 00로 00-00						
전 화 번 호	자택	(00)	사무실	(00)	휴대폰	000	-000-000	
원·피고와의 원고 및 피고와 이웃에 거주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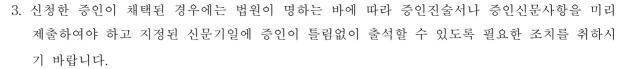
- 3.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은 원고 및 피고와 이웃에 거주하고 있으며, 평소에 원고 및 피고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가까이 지나는 사이였음. 그러던 중 20〇〇. 〇.경 원고의 집 에서 피고가 금 〇〇〇원을 차용할 때 함께 있었으며, 또한 20〇〇. 〇〇.경 피
  - 고의 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때도 함께 있었음.
- 4. 신문할 사항의 개요
- ①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지
- ②증인은 2000. 0.경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로부터 금 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아는지
- ③증인은 20○○. ○○.경 피고가 피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은 사실을 아는지
- 5. 기타 참고사항

20○○. ○. ○. 위 피고 〈★★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○민사단독 귀중







ام الرح الد	Hall & January   January  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 전에					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   신 청 기 간  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함.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		
	※ 증인신문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					
	방의 수에 3(다만,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)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					
	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규정					
	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					
	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규칙 제80조					
	제1항).					
증거조사 비 용	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규칙 제19조					
	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					
	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하고, 증거조사를 신					
	청한 사람은 위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					
	으며, 법원은 당사자가 위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					
	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(민사소송규칙 제77조). 중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함(민					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
기타	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					
	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					
	관하여 피고인,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의 죄를					
	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{형법 제152조(위증, 모해위증)}.					
	증인·감정인·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					
	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확정된 종국					
	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. 다만, 당사자가 상소					
	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,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					
	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7호).					
	중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					
	적으로 하여야 함(민사소송법 제293조). 중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					
	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. 따라서 증인신문조서					
	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, 증언한 바					
	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					
	수는 없음(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86 판결).		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